

㉠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 - 4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농어촌지역 우편업무와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전북지방우정청장

1.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시행 대상국 현황

대상국명 (관할총괄국)	위 치	취급업무	창구업무 취급시간	
			변경 전	변경 후
완주경천출장소 (완주우체국)	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38	우편업무 우체국금융	09:00~18:00	09:00~12:00

2. 시행일 : 2017. 4. 1.